

학생 해외현장학습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6.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가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해외현장학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해외현장학습이라 함은 14주 이상 기간동안 외국의 대학 또는 기관에서 수학함을 말한다.

제3조(의무) 해외현장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대학 및 기관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기간) 해외현장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수학기간동안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이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및 시행) 해외현장학습의 신청절차 및 시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선발방법) 학생의 선발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등록금 및 경비) ① 수학기간 동안 매 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반수속에 필요한 경비 및 외국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 해외현장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돕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구체적인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제출) ① 해외현장학습에 참가하는 학부(과)에서는 수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외현장학습 실시 대학의 책임자가 증명하는 학업수료증 및 성적증명서(반드시 백분율로 환산할 것), 해외현장학습 수확보고서(별지 제 1호 서식)를 국제협력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센터는 각 학부(과)에서 제출한 서류 중 학업수료증 및 성적증명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취득학점의 인정) ① 교무처는 해외현장학습에 참가한 학부(과)에서 제출한 학업수료증,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외현장학습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 교과과정상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인정하되, 인정학점 범위는 전주대학교 학칙이 정한 학기별 최대 이수학점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③ 위 2항에 의한 인정 과목의 성적은 본 대학교 성적평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학업 성적표에 기록하며, 이를 해외현장학습에서 취득한 과목의 성적임을 표기하고 총 성적 평점누계에 합산한다.

제11조(업무구분) 해외현장학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해당 학부(과) 및 국제협력센터가 주관하며,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따른다

3-4-11-2 학생해외현장학습에관한규정

이 규정은 200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해외현장학습 수학보고서

학부(전공)				학년		학번		성명	
국가명				대학명					
출국 및 귀국 사항	출국 사항	출국일시 (한국)							
		도착일시 (외국)							
	귀국 사항	출국일시 (외국)							
		도착일시 (한국)							
수학기간									
학 과 목 수강 사항		과 목 명			학점	성적	주당시간수	비고	
학교 생활	본인 자체 평가 사항	과목명		교수명	평 가 (만족,보통, 불만족)	평가사유 (간단히 기재할것)		비고	
	기타사항	항 목		담당자명	평 가 (만족,보통, 불만족)	평가사유 (간단히 기재할것)		비고	

